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08노3067 사기

피고인 A (67년생, 여), 보험대리점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정섭

변호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8. 12. 선고 2008고단1876 판결

판결선고 2008. 11.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택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등으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마침 가입해 있던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3. 11. 6.자 보험사고의 경우 그 입원기간이 2003. 11. 7.부터 2003. 11. 27.까지인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에 할인마트, 안과 및 주유소 등지에서 자신의 국민카드, 비씨카드 및 삼성카드를 사용한 점, ② 2004. 6. 14.자 보험사고의 경우 그 입원기간이 2004. 6. 15.부터 2004. 6. 21.까지인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에 할인마트 및 상점에서 자신의 국민카드를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직후인 2004. 6. 14. 18:31경에도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마트에서 자신의 비씨카드를 사용한 점, ③ 2005. 1. 12.자 보험사고의 경우 그 입원기간이 2005. 1. 13.부터 2005. 1. 26.까지인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에 주유소, 할인마트 등지에서 자신의 롯데카드, 비씨카드 및 현대카드를 사용한 점, ④ 2006. 7. 26.자 보험사고의 경우 그 입원기간이 2006. 7. 27.부터 2006. 8. 16.까지인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에 주유소, 할인마트 및 자신의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국민카드, 비씨카드 및 현대카드를 사용하였고 게다가 심야에 노래연습장에서까지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 것이 맞고 혼자 할인마트에 자주 간다고 진술

한 점, ⑥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OO병원에서 주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수액제 주사 및 근육주사 등 주사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위 OO병원에서 통원치료 수준의 치료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상해를 입었더라도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8,277,7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료기록지 등 사본의 기재, OO병원장 및 XX노인요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각 진료비 계산서, C 작성의 확인서 및 보험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는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고객들에게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관행을 정확하게 지득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스스

로 보험계약을 통하여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 그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

판사 박재억 _____

판사 남수진 _____